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사법 개정·공포('20. 6. 9.)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명확화, 어학검정시험 종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사업무 수입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설립등기 절차, 업무신고 기준, 해산신고, 설립인가 취소절차, 준용규정 등 명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개최시에는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된 행정관계 법령 등에 대한 상담·자문 업무를 동일하게 명시함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기간을 10일 전까지로 완화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델프/달프(DELF/DALF)), 독일어(괴테어학검정 시험(Goethe Zertifi-kat)), 러시아어(토르플(TORFL)) 시험 추가

자.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발표 4 개정)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차.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안 별표 2 개정)
- 3)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업무 담당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지정(안 제4조제2항 개정)
- 4)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변경(안 제3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호, 별표 1 개정)
- 5)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20조제2항, 제25조 개정)
- 6)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변경(안 제4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 개정)
-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 해촉기준 마련(안 제4조제5항 신설)
- 8)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서류제출 규정 간소화(안 제20조제2항 각 호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설명”을 “상답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기술”을 “해사”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자치제도정책관을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제도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제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행정사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기술”을 “해사”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기술”을 “해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제20조제2항 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행정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보아 법 제21조의2를 적용한다.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

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을 “30”으로 하고, 제4항 중 “30”을 “10”으로 하고, 제5항제1호 중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행정사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행정사법인의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다음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관한 사항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행정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행정사법인의 등기는 법인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5.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였을 것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 당 1억원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

2.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제23조의9(준용규정)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목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사회는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1. 제1차시험 (3과목)

가. 민법(총칙)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4과목)

일반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해산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산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라. 해당 외국어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해산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나.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2]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5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64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00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아이엘츠 (IELTS)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6.5점 이상	쓰기시험 부문 6.5점 이상
한어수평 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텔레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 증시험 텔레(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델프/달프 (DELTA/ 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 증시험 델프(Diplôme d'études en l angue française)/달프(Diplôme app ronfondi de langue française)를 말 한다.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괴테어학 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C1 쓰기 영역 15 점 이상	·C2 또는 B2 쓰기 모듈 60점 이상 ·C1 쓰기 영역 15 점 이상
토르플 (TORF 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 (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 guage)을 말한다.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
하 같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
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
에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u>자</u>	법 제38조제1항 제1호	<u>250만원</u>	<u>375만원</u>	500만원
나. 법 제14조제3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u>아니한 자</u>	법 제38조제2항 제1호	<u>50만원</u>	<u>75만원</u>	100만원

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2항 제2호	<u>50만원</u>	<u>75만원</u>	<u>100만원</u>
라.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8조제1항 제2호	<u>250만원</u>	<u>375만원</u>	500만원
마. 법 제24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38조제2항 제3호	<u>50만원</u>	<u>75만원</u>	100만원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법 제38조제2항 제4호	<u>50만원</u>	<u>75만원</u>	100만원
사. 법 제25조의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	법 제38조제1항 제2의2호	<u>250만원</u>	<u>375만원</u>	<u>500만원</u>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제1항 제3호	<u>250만원</u>	<u>375만원</u>	50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 ----- ----- -----.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u>이의신청에 관한 서류</u> 나. (생략)	1. ----- ----- -----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u>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u> 나.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u>설명</u>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u>상답 또는 자문</u>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생략)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기술행정사</u>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2. <u>해사</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자치제도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② ----- <u>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제도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제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에 따른 <u>행정사협회</u> 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나·다. (생략)	2. ----- ----- ----- 가. ----- <u>대한행정사회</u> ----- 나·다.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u>있는 경우</u>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 범위 등) ① (생략)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 <u>해사</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생략)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현행과 같음)
1.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법 제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 <u>해사</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사 업무신고) ① (생략)	제20조(행정사 업무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신설>	② ----- -----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21조의2(수입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의 수입이 제한되는 행정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의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보아 법 제21조의2를 적용한다.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때 수입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	---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때 수입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를 적용할 때 수입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30-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10----- -----. ⑤ ----- ----- ----- -----.	1. 법 제26조에 따른 <u>행정사협회</u> 2. (생략) <신 설>	1. ----- <u>대한행정사회</u> 2.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업무 신고를 한 행정사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행정사법인의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25조의3제1항 단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	---	---	--

<신 설>

<신 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관한 사항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신 설>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행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행정사법인의 등기는 법인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 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5.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登記하였을 것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
2.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제23조의9(준용규정)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u>② 행정사회는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u>도지사</u>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 ----- ----- ----- <u>특별자치시장, 도지사</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락처	(044) 205 - 3150